

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8-136호(2018. 10. 12.)로 사업시행인가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1-220호(2021.12.3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강북구 수유동 486-2 일대 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.
2. 본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,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의 열람공고에서 전자문서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26년 2월 27일
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
가. 공람기간: 2026. 2. 27.(금) ~ 2026. 3. 13.(금)

나. 공람사유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

다. 공람내용: 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(안)

라. 공람장소(직접 방문 시)

1) 강북구청 주거정비과(☎02-901-2562)

2) 삼흥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02-984-7703)

마. 의견제출

1) 서 면: 공람기간[2026. 3. 13.(금) 18:00:00] 내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에 우편도착하거나 직접 제출한 경우에만 유효함

2) 전자문서: 공람기간[2026. 3. 13.(금) 18:00:00] 내 서울도시공간포털 열람공고 (주민의견제출)에서 주민의견서 제출(업로드)한 경우에만 유효함

바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1) 종류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

- 2018년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시행 이전 정비구역 지정 없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하여 같은 법 부칙 제6조(법률 제14569호)에 의거 종전 법률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을 따름

2) 명칭: 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

사.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

1) 위치: 강북구 수유동 486-2 외 1필지

2) 면적: 9,235㎡

아. 사업시행자: 삼흥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이인순, 삼양로77길 95, 노인정 2층)

자. 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8개월

차. 사업시행계획인가일: 2018.10.12.

카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
대지면적	9,157㎡	9,157㎡
건축면적	2,615㎡	2,120.5㎡
연 면 적	25,297.8㎡	31,818.36㎡
건 폐 율	28.56%	23.15%
용 적 륜	180.75%	199.90%
높 이	최고 27.2m	최고 44.6m
용 도	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	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
층 수	지하3층/지상9층	지하4층/지상15층
세 대 수	174	193

타. 변경 사유

－ 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 및 최고고도지구(북한산 주변) 완화기준 변경에 따른 높이 등 완화 적용으로 인한 사업시행계획의 전반적 변경

파. 기타 공고문 상 생략된 자세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내용 및 관련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 및 서울도시공간포털(<https://urban.seoul.go.kr>)에 게재된 도서파일로 같음하고, 해당 계획내용 등은 최종 결정사항이 아니며 향후 공람 의견 반영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하. 관계도서: 게재생략(공람장소에 비치된 서류 및 서울도시공간포털에 게재된 공람 도서파일과 같음)